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대한민국 대전환 <b>한국판뉴딜</b>
	<b>보도</b>	<b>2021.2.5.(금) 조간</b>	배포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 동 환(02-2100-2960)	<b>담 당 자</b>	김 기 훈 사무관 (02-2100-2962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양 해 환(02-3145-7460)		박 수 홍 수석조사역 (02-3145-7451)

**제 목 : 「보험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(2.5.~3.17.)**  
**-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,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. -**

- ◆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**자본금요건이 대폭 완화**(300억원 → 20억원) 됨에 따라 보험산업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는 한편,
  -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**쉽고 간편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**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◆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**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**하고, **헬스케어·마이데이터**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## 1 | 추진 배경

□ 「보험업법」 개정\*(20.12.8일)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「보험업법 시행령」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.

\* 유동수 의원안(20.6.10일 발의) 및 정부안(20.6.29일 제출) 통합

□ 한편, 제5차 디지털 금융협의회(20.12.10일)에서 논의된 헬스케어 규제 정비\*,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근거 마련 등의 사항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.

\* 보험회사가 헬스케어·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

## 2 | 입법예고안 주요내용

### 1. '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'의 세부기준 마련

◆ (법률 위임사항)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를 새로이 도입하고  
 ①최소 자본금(10억원 이상), ②모집할 수 있는 상품 종류, 보험  
 기간, 보험금 상한액, 연간 총 보험료 등을 시행령에 위임

- ① [자본금]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**최소 자본금을 20억원**으로 설정하였습니다.
  -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·물적 요건 구비, 재무건전성(RBC)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.
  - ※ (참고) 소액단기보험회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유사수준으로 설정
  - 향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수요,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조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② [취급 상품] 장기 보장(연금·간병), 고자본(원자력·자동차 등) 필요 종목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**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**됩니다.

< 소액단기보험사 취급 가능 보험상품 >

생명보험	손해보험				제3보험
생명	화재	해상 (항공, 운송)	자동차	보증	질병
연금 (퇴직보험)	재보험	책임	기술회사	권리	상해
	도난	유리	동물	원자력	간병
	비용	날씨			

③ [보험 기간]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하여 시행령\* 및 감독 규정에서 **보험기간을 1년**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.

\* 2년 이하 범위에서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 → 감독규정에서 1년으로 설정

- ④ **[보험금·보험료]**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상한액은 **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**,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**일본과 유사한 500억원**으로 각각 설정하였습니다.
- ⑤ **[기대효과]**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는 한편,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**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**가 기대됩니다.
-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단한 보험의 제공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**소비자의 신뢰 향상**도 예상됩니다.

## 2.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

◆ (법률 위임사항) **보험회계제도 변화(IFRS17)** 등에 대비하여 보험 회사의 **책임준비금 적립**에 대해 **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**을 받도록 하며 ①**검증 대상 보험회사**, ②**검증 방법** 등을 시행령에 위임

- ① **[검증 대상]** **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**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**책임준비금\***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.

\* (책임준비금)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금원

- 총자산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**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 종목\***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검증을 받아야 합니다.

\* 생명보험(생명·연금), 제3보험(질병·상해·간병), 자동차보험

- ② **[검증 항목]**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年 1회 ①**책임준비금 적정성**과 함께 ②**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** 등에 **사용된 가정의 적정성**을 검증 받아야 합니다.

- ③ **[관련 절차]**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 회사에 대한 **자료제출 요구권**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또한,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**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**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- ④ **[기대효과]**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**확보**를 통해 우리 보험산업의 **건전성·경쟁력**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# 3. 보험회사의 자회사소유 관련 범위 · 절차 정비

① **[신사업 자회사]** 보험회사가 (i) **본인신용정보관리업**, (ii) **헬스케어 전문회사**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하였습니다.

- 기존에도 시행령 해석\*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였으나,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.

\* (시행령§59②)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

② **[절차 정비]** 보험회사가 **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\***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, 사전승인·신고가 아닌 **사후 보고**로 관련 절차가 완화됩니다.

\* (i)「벤처투자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(ii)「자본시장법」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, (iii)「자산유동화법」에 따른 자산유동화 업무 등 7개

③ **[기대효과]** 마이데이터, 헬스케어 등 **新산업 분야**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·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# 4. 기타 개정 추진사항

① 소비자의 **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 해소**를 위해 보험회사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(소비자 동의 필요)를 마련하였습니다.

< 보험업권 행정정보 활용 예시 >

부처	행정정보명	활용 예시
행안부	· 주민등록 등·초본	· 자동차보험 할인특약(자녀할인특약 등) 가입 증빙 · 배우자·자녀 보장상품(어린이보험 등) 가입 증빙 · 보험금 수익자가 가족인 경우 보험금 청구시 증빙 · 주소확인을 통한 휴면보험금·미청구보험금 안내
복지부	·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· 장애인증명서 · 차상위계층확인서	· 취약계층 보험료 할인 특약 가입시 증빙 (실손보험, 자동차보험, 이륜차보험 등) ·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시 증빙

- ②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타 보험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서면·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- ③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.

**<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>**

▶ 입법예고는 2.5일~3.17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,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-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☞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
금융위원회 보험과
- 전자우편 : kkhmarine@korea.kr
- 팩스 : 02-2100-2962

※ 시행령 제정안 전문(全文)은 “금융위 홈페이지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)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입법예고”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▶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3월중 예고할 계획입니다.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